



목돈급여 청구서

※ 별지의 「유의사항 및 구비서류」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□란에는 ✓ 표시하여 주십시오.

인 적 사 항	성명			회원번호						
	주민등록번호			소속기관						
	자택주소	☎ ()								
	자택전화번호	() -		휴대전화번호	() -					
	지급내역 수령처	☐ SMS ☐ E-mail ☐ 미발송		E-mail						
※ 중복선택이 불가하며, 미선택시 미발송 처리됩니다.										

청 구 사 유	청구사유	☐ 퇴직 ☐ 전체해약 ☐ 부분해약(약정서 ☐ 근무처 ☐ 자택 ☐ 미발급) ☐ 만기				
	청구종류	☐ 부가금형 ☐ 예탁형 ☐ 적립형				
	청구내역	회원번호 [일련번호]	가입구좌	청구구좌	금액	퇴직생활급여 전환신청구좌
		-	구좌	구좌	원	구좌
		-	구좌	구좌	원	구좌
-		구좌	구좌	원	구좌	
-		구좌	구좌	원	구좌	
-		구좌	구좌	원	구좌	
※ 목돈급여 금액은 년 월 일 추정 금액입니다. ※ 1구좌는 100만원이며, 적립형은 회원번호(일련번호)만 기재 ※ 퇴직생활급여 전환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 구좌(1구좌 500만원)를 기재하시고,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급여금수령	■ 금융기관: _____ ■ 계좌번호: _____					

재 가 입 신 청 사 항	☐ 예탁형	_____ 구좌	☐ 부가금형	_____ 구좌	☐ 비과세종합저축 전환신청	_____ 구좌
	※ 재가입 신청시 목돈급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급액에서 재가입 금액을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. ※ 청구종류가 예탁형, 부가금형은 기 가입사항과 동일한 금액만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재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재가입 일자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					

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목돈급여금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청 구 인 서명[인]

※ 유족 청구시 청구인(대표자) 인감 날인

유의사항 및 구비서류

구 분	내 용
유의사항	■ 지급내역서 수령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송 처리됩니다. ■ 급여금 수령 계좌번호는 본인(본인 사망 시는 상속인)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■ 사망 및 상이급여금 부가금형, 예탁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홈페이지 참조) ■ 부담금(원금)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, 각각의 부담금(원금)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(이자)을 적용받습니다. (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홈페이지 참조) ■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, 본회의 목돈급여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. ■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됩니다.
구비서류	■ 해약 청구 ▶ 목돈급여 청구서(부가금형은 부가금수령 계좌번호 기재)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- 2020.12.21.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(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) 추가 제출 ▶ 목돈급여 약정서 원본(분실 시 청구서 하단에 “약정서 분실” 표기 후 서명) ※ 퇴직 청구 시 퇴직(예정)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, (퇴직일 후 발급된) 경력(재직) 증명서 제출 (사본 가능) ■ 유족 청구(가입기간 중 회원 사망 시) ▶ 목돈급여 청구서(대표자 인감 날인) ▶ 회원의 기본증명서(사망일자 기재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-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(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) *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-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▶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(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) -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 성명, 인감날인 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 및 본인확인서(필수) ▶ 목돈급여 약정서 원본(분실 시 청구서 하단에 “약정서 분실” 표기 후 서명) ▶ 순직의 경우 순직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-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행 - 연금공단에서 순직 처리중인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먼저 신청하고, 순직 판정 이후 목돈급여 청구서,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를 추가 제출 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

목돈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